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 1 차 정 보 위 원 회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정보원의 정보기능 직무에 경제안보 명시 등〉
■ 이성권·박선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40호)

2026. 4.

정 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국가정보원의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직무에 경제안보를 명시	4
2.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정보 활동 대상에 국제·국가배후 해킹 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명시	15
[참고자료]	2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성권 · 박선원 · 박지원 · 권영세 · 조승환 · 김용태 · 유영하 ·
이인영 · 신성범 · 김병기 · 부승찬 · 김병주의원(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17.
3. 회부연월일 : 2026.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무역, AI 패권주의 등의 확산으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경제 중심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식량 · 에너지 · 광물 등 핵심 품목 · 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와 민 · 군 과급력이 큰 첨단 · 전략기술 육성 및 산업 우위 확보 등과 같은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음.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경제와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안보정세 변화에 따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타 부처 소관 법령을 근거로 경제안보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타 부처 소관 법령에 따른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경제안보 정보의 수집 · 작성 · 배포 기능이 수반 · 전제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에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명시되지 않아 글로벌 복합위기 속 적극적인 경제안보 활동 수행

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어 현행법상 직무 근거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2025년 한해에만 SK텔레콤, KT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이 사이버안보를 위협하고 있음.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은 개별 행정부처 또는 기업 등의 일반적인 예방 활동만으로는 완전 차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직을 동원하는 활동 특성상 사고 발생시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크다는 특징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민간 영역에서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에도 그 해킹수법이나 피해 양상 등에 비추어 공격 배후가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이 그 배후를 규명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와 신속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소행임을 밝혀내고 일반적인 사이버 위협이 아닌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 특성에 맞춘 후속조치를 강구하며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해야 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나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및 조사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관부처 간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및 조사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더불어 ‘경제안보’를 명시하여 정보기관의 적극적 경제안보 직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사이버안보 정보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정보 직무의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마목 등).

Ⅲ. 검토의견

1. 국가정보원의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직무에 경제안보를 명시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직무에 경제안보(경제안보품목·경제안보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육성, 전략물자 수출입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나목).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직무) -----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1.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나.----- ----- ----- ---- 포함한다), <u>경제안보(경제안보품목·경제안보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u>

현 행	개 정 안
다. ~ 마. (생 략) 2. ~ 6. (생 략) ②~④ (생 략)	<u>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및 보호육성, 전략물자 수출입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다),</u> ----- ----- 다. ~ 바.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관련된 직무로¹⁾ ①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②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③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암호부정사용,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④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⑤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이머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직무를 나열하고 있고,

경제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의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에 관한 정보”를 근거로 실시하거나,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이라 함),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함), 「대외무역법」과 그 시행령 등 개별법령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음.²⁾

< 경제안보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권한 >

법령명	근거 조문	국가정보원 권한
「공급망 안정화법」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협의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정부위원으로서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사항 심의·조정
	제13조(경제안보품목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경제안보품목 지정 여부 결정 관련 국가안보·경제안보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제시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제17조(관세정보의 제공)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공급망 위기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청장에 과세정보 요청 가능

2) 구체적인 조문은 [참고자료 1] 참조

「공급망 안정화법 시행령」	제2조(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해 소관 분야의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소재부품장비 산업법 시행령」	제6조(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5조(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자원안보협의회의 정부위원으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국가첨단전략 산업법」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첨단전략기술 불법 수출 조사
「국가첨단전략 산업법 시행령」	제7조(국가전략산업위원회)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심의·의결
「대외무역법」	제26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 중 국내외 전략물자 등 관련 정보협력,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등 수출입, 무허가수출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등 국제 정세불안과 미-중 무역 갈등, AI 패권주의 등의 확산으로 국제 무역질서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은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미래 전략, 경제안보, 식량안보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 수집·작성·배포 활동을 수행하고자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³⁾

이러한 경제안보 정보활동 과정에서 국내외가 연결된 경제안보 분야 정보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해외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의 공급망 현황, 전략물자의 수급동향, 대(對) 정부 요망사항 등에 대한 국내정보의 수집·작성·배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 경제안보 관련 법

3) 문재연, “[단독] 국정원, ‘미래전략국’ 신설... 신종 안보위협 탐지? 국내정보 부활?”, 한국일보, 2025. 10. 2. (최종 검색일: 2026. 3. 25.) <<https://v.daum.net/v/20251002043311964>>

령들의 근거규정은 주로 위원회의 정부위원으로 선임되어 심의·조정·협의를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고, 더 역할범위가 넓은 「공급망 안정화법」에서도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정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의 임무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경제안보 정보직무 수행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직무에 경제안보를 명시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이 경제안보 정보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경제안보가 이미 안보의 핵심적인 영역에 포함되었고, 이란 전쟁, AI 패권주의 등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경제안보에 포함될 분야들을 예시하고 있으나, 금융안보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나 ‘가상자산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과 같이 추가로 포함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구체적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⁴⁾ 제1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등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국가정보원장이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금융안보와 관련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급격한 자본 유출입 등으로부터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과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가상자산의 거래 질서 확립과 안보위협적 자금흐름 차단 등을 위한 ‘가상자산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 등을 팔호 안에 추가할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육성·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중 “보호 육성”을 “육성·보호”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

② · ③ (생략)

④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 ⑫ (생략)

셋째, 앞에서 소개한 미래 전략, 경제 안보 등에 대한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활동 부활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는 언론 보도⁵⁾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020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이전에 국가정보원이 국내 보안 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顛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배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⁶⁾ 법 개정을 통해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국외,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에 관한 정보로 국한하며, 같은 법 제11조(정치 관여 금지)⁷⁾ 규정을 두어 과거와 같은 성격의 국내

5) 문재연, 앞의 글, 한국일보, 2025. 10. 2.

6) 「국가정보원법」(법률 제12948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顛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가정보원법」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7.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③ 직원은 원장, 차장·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

정보 수집 활동을 금지한 바 있음.

이후, 국내외가 연결된 경제안보분야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의 필요성에 따라 2023년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국외정보의 개념을 기존의 외국의 정치·경제 등 각 부문에 관한 정보에 더해 이러한 정보가 국가안보·국익·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로 확장한 바 있으나,⁸⁾

국외정보에 해당하는 경제안보 정보의 범위가 여전히 불명확하고 제한적이라는 관점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따라서, 정보기관의 적극적 경제안보 직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은 과거와 같은 성격의 국내정보 수집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의 각종 업무규정⁹⁾의 근거가 되는 「국가정보원법」

행을 지시 받은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직원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직원이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외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기술·운송·통신·지리·인물·환경·보건 등에 관한 정보

나. 가목에 따른 정보가 국가안보·국익·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1의2. (생략)

2. ~ 6. (생략)

9) 「보안업무규정」,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방첩업무 규정」, 「우주안보 업무 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대한 대응업무규정」

제4조제4항¹⁰⁾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3조(국정원의 운영 원칙)¹¹⁾ 및 제11조(정치 관여 금지)가 준수될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개정안 중 “경제안보품목”, “경제안보서비스”, “공급망”, “국가 자원안보”, “전략물자” 등 용어의 뜻이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석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바, 해당 용어가 사용된 법률을 인용하는 등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음.

< 경제안보 관련 법률에 따른 용어의 정의 >

용어	근거 조문	정의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법」 제2조(정의)	국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통상·정치·외교적 상황 변화나 자연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생산, 소비, 유통 등 국가 및 국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품목, 서비스, 기술 등이 원활히 유입되고, 부적절하게 해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이 유지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하는 상태
경제안보 품목	「공급망 안정화법」 제2조(정의)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원재료등”이라 한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

10)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 ④ (생략)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 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국가정보원법」 제3조(국정원의 운영 원칙) ① 국정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제안보 서비스	「공급망 안정화법」 제2조(정의)	그 안정적인 제공 및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도입·생산과 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로서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것
공급망	「공급망 안정화법」 제2조(정의)	국내외에서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물자 또는 원재료(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획득하고, 이를 중간생산물이나 최종생산물로 변환하며,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모든 체계와 과정
공급망 안정화	「공급망 안정화법」 제2조(정의)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를 저해하는 위협요인의 예방·대비·대응을 포함하여 공급망의 탄력적 회복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 산업법」 제2조(정의)	소재·부품: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장비: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원안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정의)	핵심자원의 가격 안정화와 중단 없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망의 안정적인 유지와 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비하고, 그 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상태
국가첨단 전략산업	「국가첨단전략 산업법」 제2조(정의)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
국가첨단 전략기술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
전략물자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 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 균열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식량·에너지·광물 등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가 국가안보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 해외 중심의 단편적 정보만으로는 종합적인 정책지원정보 생산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으로, 직무조항 명확화를 통한 정보수집 역량 강화가 시급하고,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에서도 경제안보 업무가 정보기관의 직무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추세로 우리나라 역시 경제안보 업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정보기관의 경제안보 관련 해외 입법례 >

국가	관련법	주요 내용
영국	Intelligence Services Act (정보서비스법) Security Service Act (보안정보부법)	○ 비밀정보국(SIS), 보안국(SS), 국가통신정보본부(GCHQ)의 기능을 규정 ○ 정보기관의 임무에 국가의 ‘경제적 번영(economic well-being)’을 위한 정보활동 규정을 명시
프랑스	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프랑스 치안법전)	○ 국내안보총국(DGSI)·해외안보총국(DGSE) 등의 권한을 규정 ○ 정보기관의 경제안보(프랑스의 주요 경제적, 산업적, 과학적 이익에 관한 사항) 정보수집 권한을 명시
이탈리아	Legge 3 agosto 2007, n.124 (정보기관 개혁법)	○ 보안정보부(DIS) 등 정보기관의 구조·조직·임무 등을 규정 ○ 정보기관의 합법적 임무 범위에 경제·산업 분야를 명시적으로 포함(“정보안보 조직은 (중략) 이탈리아의 정치적·군사적·경제적·과학적·산업적 관계의 방어를 그 임무로 한다)
스페인	Reguladora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국가정보부법)	○ 국가정보부(CNI)의 법적·조직적 근거를 규정 ○ 국가정보부의 국가 경제·산업·상업 보호 기능(“국가정보부는 스페인의 정치적·경제적·산업적·상업적·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평가·해석, 배포”)을 명시

자료: 국가정보원

2.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정보 활동 대상에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명시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직무 중 사이버안보 영역과 관련하여,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마목·바목).

현행	개정안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가. ~ 라. (생략) 마. <u>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정보</u> <신설> 2. ~ 6. (생략) ②~④ (생략)	제4조(직무) ----- -----. 1. ----- ----- 가. ~ 라. (생략) 마. <u>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그 활동(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사이버안보 정보</u> 바. <u>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정보</u> 2. ~ 6.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생략)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 목부터 <u>마목</u> 까지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② ----- --- <u>바목</u> ----- ----- ----- ----- -----.
· 문서열람 · 시료채취 · 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사이버안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사이버안보정보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건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사이버안보정보 업무) ②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¹²⁾

12)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가. ~ 라. (생략)
마. 국제 및 구각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건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¹³⁾ 국가적인 사이버위기에 대한 대응을 주도¹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6. (생략)

② ~ ④ (생략)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안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사이버안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1.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업무

나.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업무 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다.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행하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의 기획·조정 업무

2. 사이버보안 업무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관련 기획·조정 업무

13) 「국가정보원법」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원장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직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국정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관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4조(국가사이버안보센터) ①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는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 통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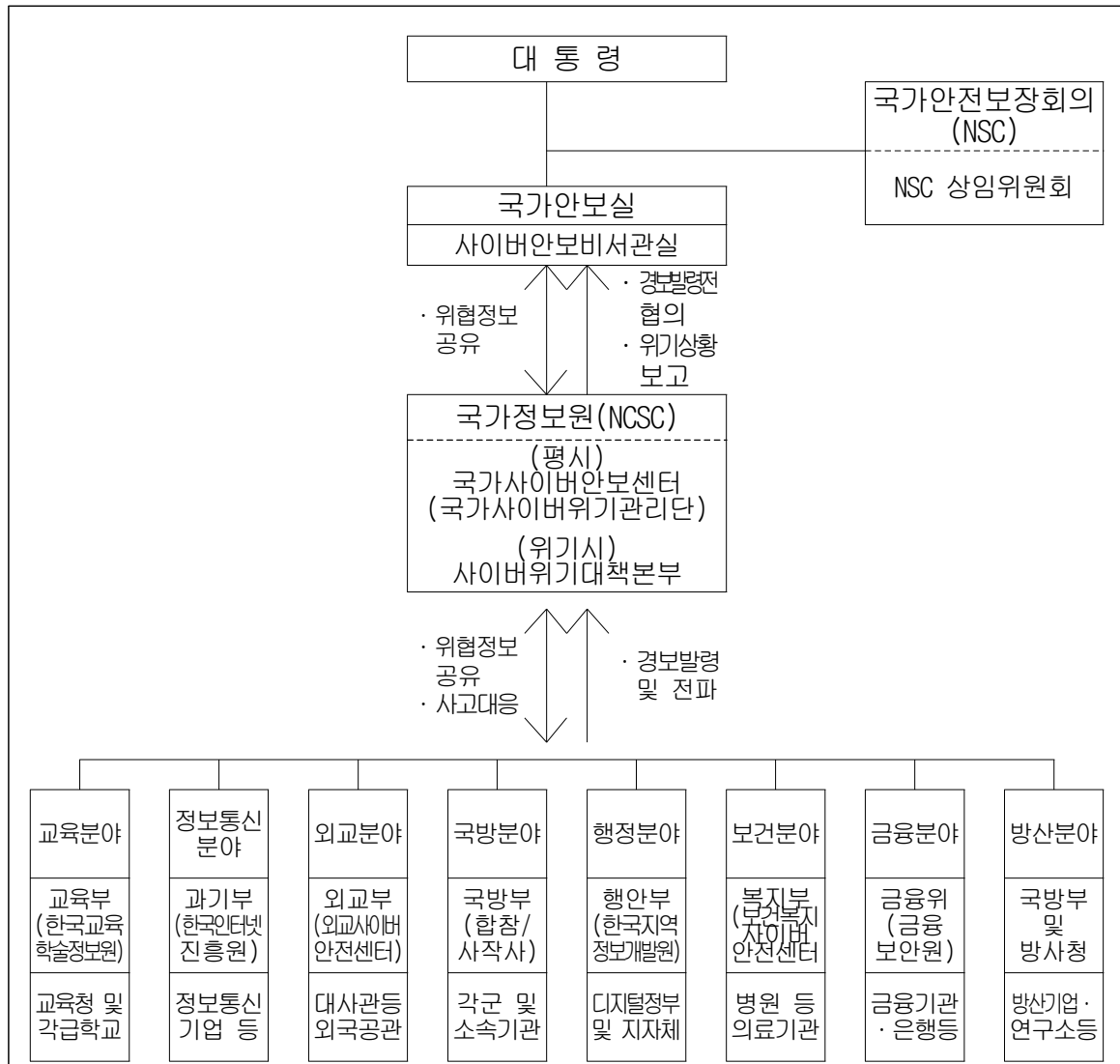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사이버안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2(사이버안보정보 업무 수행 관련 대응조치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인 시험·분석을 할 수 있다.

국가적 사이버위기상황이 아닌 경우 민간부문 각 분야의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는 소관 부처의 유관 법률에 따라 소관 부처 또는 산하기관 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분석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하여 국외 및 북한 소재 거점을 대상으로 추적, 무력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나 국익에 반하는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로서 국가안보실장과 협의하여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민관합동 통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한편, 2025년 10월 22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국가정보원의 조사·분석 도구를 민간과 공동 활용하도록 하고, 부처별로 파편화된 해킹 사고조사 과정을 체계화하여 One-Stop 신고체계 도입과 조사단별 투입시기 최적화 및 상호 정보공유를 강화하며,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2025년 기간통신사업자인 SKT와 KT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발생(2025. 4. SKT유심정보 유출사건, 2025. 8. KT 인증정보 탈취로 인한 무단소액결제)한 이후 국가정보원은 이를 국가배후 해킹으로 의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고조사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정보 수집 및 이에 필요한 조사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 밖으로 해석하여 사고조사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있음.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상 국제·국가배후 해킹 조직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들의 활동에 대한 ‘확인·견제·차단’ 및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조사권한을 직무로 명시하고 있어 국제·국가배후 해킹

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에 이들 활동이 당연히 포함되고, 공격 배후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해킹수법, 피해 양상에 비추어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정보수집 및 필요한 조사가 가능하여 국가안보 차원에서 사고 발생 전후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이에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정보 활동 대상에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유관부처 간 직무범위에 대한 해석의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과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조 필요성, 공공과 민간의 분리에 대한 부적절성,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 대응의 필요성이 수 차례 제기되었고,¹⁵⁾

제18대 국회에서부터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등 법안을 통해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국가정보원의 역할 강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개정안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직무 범위를 명확화하고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15) 국가정보원 국정감사(2025. 11. 4.), 「국가사이버안보법안」·「사이버안보 기본법안」상정 시 대체토론(2025. 11. 24.), 「국가사이버안보법안」·「사이버안보 기본법안」에 대한 법안소위 심사(2026. 2. 3.) 시

<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 발의 연혁(제18대국회-제21대국회) >

발의대수	제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제18대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	공성진의원	'08. 10. 28.
제19대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안	하태경의원	'13. 3. 26.
제19대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서상기의원	'13. 4. 9.
제19대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이철우의원	'15. 5. 19.
제19대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이노근의원	'15. 6. 24.
제19대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서상기의원	'16. 2. 22.
제20대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이철우의원	'16. 5. 30.
제20대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정부	'17. 1. 3.
제21대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조태용의원	'20. 6. 30.
제21대	국가사이버안보법안	김병기의원	'21. 11. 4.
제21대	사이버보안 기본법안	윤영찬의원	'21. 12. 2.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재 개정안은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심되는 경우의 요건이 되는 어떤 해킹수법이나 어느 정도의 피해의 양상인가 등에 비추어 의심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의심되는 경우만으로는 정보 조사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었음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많은 입법례와 같이 ‘의심되는 경우’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및 ‘의심되는 경우’와 관련된 입법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 ⑦ (생략)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이하 이 조에서 "직무질문"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 그 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 ⑦ (생략)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①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 ⑥ (생략)

제73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① 운수업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약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약정보시스템을 열람하게 하거나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히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

② ~ ⑦ (생략)

「여권법」 제11조(여권의 재발급) ①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 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 여권의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사업법」 제47조의2(정보 제공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2에 따른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 개인에게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승차권 구매이력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항공안전법」,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국제법 중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국제법규”라 한다), 그 밖의 관계 법률을 위반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거나 침범하려는 항공기

2.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로서 국가 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항공기

② (생략)

「**검역법**」 제15조(검역조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2.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하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라 한다)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3.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4.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 4의2.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5. 삭제 <2020. 3. 4.>
6.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7.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8.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② ~ ⑤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은 다년간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DNA에 해당하는 TTP 데이터¹⁶⁾를 축적·보유해 왔고, ‘의심’은 단순한 짐작·추측이 아니라 개정안의 범문대로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으며, 실제로도 입수·분석한 기술적 증거 등 구체적 정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의심’의 신뢰성이 높다는 입장이나, 최근 AI의 발달과 다크웹 등의 활성화로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멀웨어·랜섬웨어 등이 구독형으로 제공(Malware-as-a-service)되는 등 사이버 범죄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정보수집 및 필요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음을 고려하고, 국가정보원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우려 등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개정안의 ‘의심되는 경우’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여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개정(법률 제21500호, 2026. 3. 31., 일부개정)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외에도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

16) Tactic, Technique, Procedure(해킹수법, 악성코드, 경유지 등)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에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등(같은 법 제48조의4제6항)¹⁷⁾,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¹⁸⁾하려는 추세임을 심사에 참고할 수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국제, 국가배후 해킹조직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정보 활동 대상이 된 경우 「국가정보원법」 제15조¹⁹⁾에 따라 국회에 사후보고를 하여 정부의 권한

17)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500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침해사고로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⑧ (생략)

18)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500호, 2026. 3. 31.,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

19) 「국가정보원법」 제15조(국회에의 보고 등) ①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남용 우려를 해소하고, 중복 조사에 따른 민간의 부담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제1항²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자료공유 등 조사 협력 체계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²¹⁾

그러나, 「국가정보원법」 제15조는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국제, 국가배후 해킹조직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정보 활동이 이루어 질때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 6788-5614

②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0)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 ⑤ (생략)

21) 그러나, 「국가정보원법」 제15조(보고)는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경제안보 관련 법령 중 국가정보원 권한 관련 조문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과 그 시행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급망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2.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기본 사항
3.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 방향
4. 물류·유통·금융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관한 시책
5. 공급망 관련 국제정세, 국제교역, 외국정부의 정책 변화 등 동향
6.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이하 “경제안보품목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8.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시책
10. 국내외 생산시설 투자 확대 등 생산기반 조성, 구입처 등 다변화, 비축, 기술의 도입·개량·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재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국제협력
12.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본

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급망 안정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7. 제29조에 따른 위기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제35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38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정보원장
3.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경제안보품목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외의존도 현황 및 전망
2.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 및 전망
3. 공급망 위험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
4. 외국정부 또는 해외 공급자의 정책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의 정도
5. 자연재해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의 정도
6. 국내외 생산기반의 조성, 구입처의 다변화, 비축, 생산기술의 도입·개량·개발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가능성
7.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경제안보를 위하여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경제안보품목등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으로 지정한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이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경제안보품목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의 기준·절차, 중요도에 따른 분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공급망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 및 원재료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및 가격, 생산량의 변화, 외국정부 또는 기업의 정책변경, 물류 또는 지급·결제의 장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1.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물자 및 원재료등
2.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자 및 원재료등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자 및 원재료등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제1항에 따라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운영·관리기관”이라 한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정세 및 국내외 시장환경 등을 감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4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관 품목 등과 관련된 사업자·사업자단체 및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해당 물자 및 원재료등에 대한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운영·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출받은 운영 결과를 각 운영·관리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운영 결과 등을 공유하는 시기, 빈도 및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관리 실태를 총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 등의 조치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공급망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품목 등의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회의 등을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관세정보의 제공)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공급망 위기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과세정보의 범위, 대상 및 비식별정보 처리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조(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해 소관 분야의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2.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기본 사항
3.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 방향
4. 물류·유통·금융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관한 주요 시책
5. 법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이하 “경제안보품목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6. 법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7. 법 제29조에 따른 위기품목의 관리,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법 제32조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응에 관한 주요 시책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인접한 2개 이상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7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물자 및 원재료등에 대한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 및 원재료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구입량, 구입단가 및 향후 구입계획
2. 생산량 및 향후 생산계획
3. 재고량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

에서 “운영·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반기별 운영 결과를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급망 위험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운영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각 운영·관리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영 결과를 지체 없이 공유해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공급망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조기경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운영·관리하는 조기경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⑦ 운영·관리기관의 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운영·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품목별, 수입업자·수출업자별, 국가별 수출입량
2. 경제안보품목의 수출입가격(변동내역을 포함한다) 및 과세내역

② 관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수출업자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소재·부품·자입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그 시행령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3.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 수립

4. 새로운 소재·부품·장비의 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사업의 실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의 개발 및 공급대책
 5.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경쟁력 혁신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변경
 6. 소재·부품·장비분야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업무의 조정
 7.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8.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실증·성능검증·생산 지원
 9.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예산·자금·인력·입지 등 규제·제도개선외 부처 간 조율 및 종합 전략 수립
 10.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관리
 11. 소재·부품·장비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간의 조율
 - 11의2.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규제개선 등의 검토
 - 11의3.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에 관한 기본방향
 12.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경쟁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항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④ 경쟁력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 ⑤ 경쟁력위원회는 대·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이하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라 한다)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의견 및 상생모델 등에 대한 건의를 들을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경쟁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협회·기업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⑦ 경쟁력위원회,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및 대·중소기업상생협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금융위원회위원장
2. 경쟁력위원회에 상정된 안전과 관련하여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제·과학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회의 장
3.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아닌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경쟁력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쟁력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기관별로 각각 1명씩 지명한다.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그 시행령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6조(자원안보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① 자원안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자원안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예산·자금·인력 등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 전략·정책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평가 및 제11조에 따른 공급망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4. 핵심자원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핵심자원의 비축의무 및 제16조에 따른 비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시책에 관한 사항
7. 제21조에 따른 핵심공급기관의 지정·관리·해제에 관한 사항
8. 제22조에 따른 핵심수요기관의 지정·관리·해제에 관한 사항
9.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장은 자원안보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5조(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 차관 1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1명
3. 외교부 장관이 지명하는 외교부 차관 1명
4.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5. 산업통상부 차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7.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 차관 1명
8. 해양수산부 차관

9. 중소벤처기업부차관

9의2. 기획예산처차관

10.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차장 1명

11. 국가안보실 제3차장

12. 관세청장

13. 조달청장

14. 국가데이터처장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0. 1.>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그 시행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①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6.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전략산업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
9. 전략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첨단전략산업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⑤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전략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략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

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기술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전략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첨단 전략산업조정위원회)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정위원회의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국가정보원차장
5. 지식재산처장
6.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7.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삭제

⑥ 조정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

□ 「대외무역법」 과 그 시행령

「대외무역법」 제26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별로 그 소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주재한다.

③ 협의회의 구성원인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무허가 수출등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7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항별로 참석 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협의회를 소집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중 전략물자등 관련 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2. 외교부: 외교에 영향을 주는 사항 및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 대상 품목 중 전략물자등에 관한 사항 및 남북 교류·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4. 국방부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물자·국방과학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및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산업통상부: 전략물자등(원자력 전용 품목은 제외한다)의 수출입통제 및 통상교섭에 영향을 주는 사항

6.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략물자등 중 원자력 전용 품목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7. 관세청: 전략물자등 통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무허가수출등(이하 “무허가수출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8. 정보수사기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말한다): 국내외 전략물자등 관련 정보협력,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등 수출입, 무허가수출등에 관한 사항
- ② 협의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되는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 ③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④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⑤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5. 국군방첩사령부

